



# 표준 무역거래 약정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목 차

1. 적용 (APPLICATION)	4
SECTION 1 – 무역서비스	
2. ICC 규칙 (ICC RULES)	4
3. 화환신용장 (DOCUMENTARY CREDITS)	5
4. 증서 (INSTRUMENTS)	8
5. 추심 (COLLECTIONS)	10
6. 금융 및 금융서비스 (FINANCE)	10
7. 무역관련대출(TRADE FINANCE LOANS)	11
8. 물품출고, 수입화물선취보증, 면책약정서의 신청 (APPLICATIONS FOR RELEASE OF GOODS, SHIPPING GUARANTEES AND LETTERS OF INDEMNITY)	12
SECTION 2 – 상환, 면책약정 및 기타권리 (REIMBURSEMENT, INDEMNITY AND OTHER RIGHTS)	
9. 상환 및 면책약정 (REIMBURSEMENT AND INDEMNITY)	13
10. 현금담보 (CASH COLLATERAL)	14
11. 질권 (PLEDGE)	14
12. 수입화물대도 (TRUST RECEIPTS)	15
13. 상계 (SET-OFF)	16
14. 추가권리 (SUPPLEMENTARY RIGHTS)	16
SECTION 3 – 수수료와 지급 (FEES AND PAYMENTS)	
15. 수수료와 이자 (FEES, COMMISSION, INTEREST AND CHARGES)	16
16. 지급 (PAYMENTS)	17
SECTION 4 – 진술, 이행약속 및 제재 (REPRESENTATIONS, UNDERTAKINGS AND SANCTIONS)	
17. 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18
18. 동의 (UNDERTAKINGS)	19
19. 법규준수와 제재 (COMPLIANCE WITH LAWS AND SANCTIONS)	21
SECTION 5 – 지시서와 전자 플랫폼 (INSTRUCTIONS AND ELECTRONIC PLATFORMS)	
20. 지시서 (INSTRUCTIONS)	22
21. 플랫폼 (PLATFORMS)	24

<u>SECTION 6 - 기타 (OTHER)</u>	25
22. 책임제한 (LIMITATION ON LIABILITY)	25
23. 공개, 기밀유지 및 정보보호( DISCLOSURE, CONFIDENTIALITY AND PRIVACY)	26
24. 기타 (MISCELLANEOUS)	27
25. 준거법과 관할권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28
<u>SECTION 7 – 용어 정의(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u>	29
26. 용어 정의 및 해석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29
<u>SECTION 8 – 국가별 부속계약 (COUNTRY CONDITIONS)</u>	33
27. 적용	33
28. 추가 / 보충약정	33

## 표준 무역거래 약정 (이하 '본 표준약정')

### 1. 적용 (APPLICATION)

- 1.1 본 표준약정은 HSBC 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무역 서비스에 적용되며, 본 표준약정은 해당 국가별 부속계약을 포함한다.
- 1.2 본 표준약정은 HSBC 가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약관(은행 서비스, 계좌운영 관련 약관 등)의 적용을 받는다. 무역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표준약정 그리고 적용되는 기타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아래의 순서로 적용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a) 신청서
  - (b) 여신거래약정서(Facility Agreement) 그리고/또는 담보계약서 (있는 경우)
  - (c) 국가별 부속계약
  - (d) 본 표준약정
  - (e) 기타 약관
- 1.3 HSBC 는 무역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 어떠한 자문도 제공하지 않는다. HSBC 는 정보 또는 명확한 의견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정보 또는 의견이 자문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은 무역서비스의 신청 또는 수락 이전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및 평가를 직접 하고, HSBC 에 자문 및 권고 제공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일 무역서비스에 대하여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고객은 독립적인 전문 자문가에 문의하도록 한다.
- 1.4 각 무역 서비스는 동 서비스에 관련된 무역 거래와 별개이며 독립성을 가진다. 또한, 동 서비스 관련 문서에 언급이 되어 있을 지라도, HSBC 는 이러한 무역거래 약정과 연관되거나, 이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 1.5 HSBC 는 환거래은행(HSBC 그룹 계열사일 수도 있음)을 무역서비스에서의 발행은행, 통지은행, 지정은행, 확인은행 등으로 지정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환거래은행을 HSBC 그룹 계열사 또는 HSBC 가 수락하는 환거래은행만으로 제한할 수 있음), HSBC 가 정하는 양식 및 내용으로 동 환거래 은행에 구상보증(counter-guarantee 또는 counter-SBLC)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HSBC 는 환거래은행에 수수료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할 수 있다.
- 1.6 본 약정의 어떠한 내용도 HSBC 에게 무역 서비스 개시 및 제공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SECTION 1 – 무역서비스(TRADE SERVICES)

### 2. ICC 규칙 (ICC RULES)

- 2.1 고객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그리고 HSBC 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가 적용된다

- (a) 모든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은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600)에 따라 발행되며, HSBC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신용장통일규칙(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에 따른다.
- (b) 모든 보증신용장(SBLC)은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ICC Publication No. 590, ISP98)에 따라 발행된다.
- (c) 모든 채권과 보증서는 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758, URDG 758)에 따라 발행된다.
- (d) 모든 추심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ICC Publication No. 522, URC 522)에 따라 이행되며, HSBC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전자제시에 대한 부속서 (The Uniform Rules of Collections (URC522)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RC)에 따른다.

각각의 경우, 규칙의 개정본을 포함하기로 하고, 본 표준약관에 더하여 고객의 의무와 권리는 해당 ICC 규칙에 따르기로 한다.

- 2.2 ICC 규칙과 본 표준약정이 상충되는 경우, 본 표준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

- 3.1 본 조항의 약정은 화환신용장에 적용된다.

- 3.2 고객은,

- (a) HSBC가 발행한 각 화환신용장의 고객용 사본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 (b)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HSBC에 통지하기로 한다.

### 수입 (IMPORTS)

- 3.3 HSBC는 화환신용장에 의거 작성 (또는 작성될) 및 제시된 서류가 동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경우, 해당 고객 또는 기타 당사자의 추가 권한을 받지 않고, 또한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의 유효성 또는 금액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급을 이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고객은 HSBC가 지급 이행의 의무가 있는 청구를 결정적 증거로 수락하며, HSBC가 동 청구에 따라 선의로 취한 모든 조치는 고객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3.4 HSBC가 화환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서류가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해당 신용장의 요건을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서류의 제시는 해당 신용장의 조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객은 이러한 서류의 검토로 인한 지연 또는 불일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HSBC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3.5 고객이 반대 내용의 지시를 보내는 경우에도, HSBC는 해당 화환신용장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HSBC는 고객에게 사후 통지하기로 한다. 또한 HSBC는 이러한 청구를 거절하기 전 고객에 통지할 의무 또는 불일치에 대한 고객의 권리포기를 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HSBC가 불일치와 관련된 권리포기를 구하여도, 이러한 조치로 인해 다음 번에도 불일치에 대한 권리포기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6 HSBC는 청구와 관련하여 불일치가 있음을 고객에 알리고, 고객은 HSBC 그리고/또는 환거래은행 및 대리인에 다음을 요청한다.
- (a)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환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지급을 이행, 또는
  - (b) 불일치 하는 내용을 커버하는 보증서 또는 면책약정서(indemnity)를 발행
- 고객은 제 9 조(상환 및 면책약정)에 명시된 상환의무와 면책약정이 해당 청구 그리고/또는 보증 및 면책약정서에 적용됨을 확인한다.
- 3.7 HSBC는 고객에게 사전통지의 방식으로 화환신용장의 약정을 수정하거나 추가 조건을 삽입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HSBC는 고객에게 해당 기간내에 이의제기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HSBC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화환신용장의 총액 또는 미사용 잔액을 취소 할 수 있다.
- 3.8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HSBC는 내부규정에 따라 화환신용장, 통지, 확인의 사용을 HSBC 계열사 또는 HSBC가 선택한 환거래은행 및 대리인으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HSBC는 이들 외의 은행 및 제 3 자에 발행된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을 거부 할 수 있다.
- 3.9 HSBC가 화환신용장에 명시된 만기일자 이전에 화환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는 경우,
- (a) (화환신용장의 수익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HSBC가 화환신용장에 따른 할인금액만을 지급하였을지라도, 고객은 만기일에 화환신용장의 총액을 HSBC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b) (고객이 HSBC 와 맺은 다른 계약에 따라 화환신용장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고객은 동 화환신용장의 만기일 또는 HSBC가 요청하는 만기일 이전의 날짜에, 청구금액 전액과 HSBC의 지급일자로부터 만기일자까지 발생한 이자금액, 제 15 조(수수료와 이자)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금액을 HSBC에 지급하여야 한다.
- 3.10 화환신용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에 따라 신용장에 의한 서류가 접수되기 전 수익자에 지급이 허용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신용장의 만기일 또는 HSBC가 요청하는 만기일 이전의 날짜에 청구금액 전액 (상기 접수된 서류가 해당 신용장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HSBC의 지급일자로부터 만기일자까지 발생한 이자금액, 제 15 조(수수료와 이자)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금액을 HSBC에 지급하여야 한다.
- 3.11 만일 화환신용장에 수익자는 청구 시 또는 그 이전에 특정 서류를 고객에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해당 화환신용장에 따라 HSBC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객이 물품의 점유를 위해 직접 전달된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HSBC는 고객 또는 HSBC의 의무를 면제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일치 및 기타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모든 서류를

인수하고 제시와 동시에 지급 또는 인수하며 만기 시 물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지급을 이행할 수 있다. 고객은 제 9 조 (상환 및 면책약정)에 명시된 상환의무 및 면책약정이 화환신용장과 관련하여 HSBC 가 지급한 금액에 적용됨을 확인한다.

- 3.12 화환신용장에 상품이 "협회적화조항(Institute Cargo Clauses)" 또는 기타 업계표준조항을 포함하는 보험증권에 부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HSBC 는 "미국협회적화조항(American Institute Clauses)" 또는 HSBC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업계표준조항을 포함하는 보험증권을 인정 할 수 있다.
- 3.13 HSBC 는 고객이 서류 또는 상품과 관련된 화환신용장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해당 서류 또는 상품을 고객에 넘겨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3.14 HSBC 가 다른 화환신용장(마스터 신용장, Master Documentary Credit)에 대한 동시개설신용장(Back-to-Back Documentary Credit)을 발행하는 경우, 고객은,
- (a) 동시개설신용장과 관련된 고객 채무는 마스터 신용장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 (b) 마스터 신용장에 따른 지급 권리 일체를 무조건적 그리고 변경 없이 HSBC 에 양도 또는 이전한다.
  - (c) HSBC 동의 없이 마스터 신용장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수락할 수 없으며, HSBC 가 마스터 신용장에 따른 전액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d) HSBC 가 동시개설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서류를 사용하여 마스터 신용장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 (제시된 서류에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한을 부여한다.
- 3.15 HSBC 는 동시개설신용장과 마스터 신용장의 조건 간 양립 불가한 부분이 있음을 고객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수출 (EXPORTS)

- 3.16 HSBC 가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을 확인(confirmation)하고(개설은행에 고지여부를 불문) 해당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해당 미수령이 상환청구 사유(Recourse Event)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미수령된 금액에 대해 HSBC 에 상환한다. 고객은 HSBC 가 요구하는 즉시 제 15 조 (수수료와 이자)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자와 함께 이러한 상환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수령의 결과로 HSBC 가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3.17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이 HSBC 의 동의없이 수정되거나,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의 원본이 HSBC 가 확인 기준으로 삼는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의 사본과 다르거나, 고객이 제 3 조(화환신용장)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환청구 사유로 HSBC 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HSBC 가 인수하지 못한 경우), HSBC 는 (개설은행에 고지여부를 불문) 확인 (confirmation) 에 구속되지 않으며,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을 매입할 의무가 없다.
- 3.18 만일 HSBC 가 개설은행에 고지 없이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을 확인(confirmation)하는 경우, 고객은 HSBC 외에는 어떤 이에게도 해당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에 대한 제시를 해서는 안되며, HSBC 에 개설은행이 발행한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의 원본, 관련 서류 및 이들의 수정본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3.19 만일 HSBC 가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을 확인한 경우 (개설은행에 고지여부를 불문), 고객은
- (a) 무조건적 그리고 취소불능으로, 해당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의 지급권리 일체를 HSBC 에 양도 또는 이전하고,
  - (b) HSBC 가 해당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에 따른 금액 전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

#### 4. 증서(INSTRUMENTS)

- 4.1 본 조항의 약정은, HSBC 가 발행, 확인 또는 제공하는 보증신용장, 요구불보증(특별 보증, 공동인수를 포함), 채권, 구상보증(counter-guarantee 또는 counter-SBLC) 또는 기타 유사한 독립지급채무(이들의 연장, 갱신 또는 수정을 포함) (각각을 "증서"라 함)에 모두 적용된다.
- 4.2 고객은,
- (a) HSBC 가 발행 또는 체결한 각 증서의 고객용 사본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 (b)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HSBC 에 통지하기로 한다.
- 4.3 HSBC 는, 문면상 조건을 준수하는 증서에 따른 청구신청에 대하여, 해당 고객 또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권한을 받지 않고, 또한 HSBC 에 대한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의 유효성 또는 금액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을 이행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객은 HSBC 가 지급 또는 준수의 의무가 있는 청구를 결정적 증거로 수락하며, HSBC 가 동 청구에 따라 선의로 취한 모든 조치는 고객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4.4 HSBC 가 증서에 따라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유효하며, 전체적으로 해당 증서의 요건을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서류의 제시는 해당 증서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객은 이러한 서류 검토에 따른 지연 또는 불일치 내용 미확인에 대하여 HSBC 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HSBC 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4.5 고객이 반대 내용의 지시를 보내는 경우에도, HSBC 는 해당 화환신용장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HSBC 는 이러한 청구를 거절하기 전 고객에 통지할 의무 또는 불일치에 대한 고객의 권리포기를 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HSBC 가 불일치와 관련된 권리포기를 구하여도, 이러한 조치로 인해 다음 번에도 불일치에 대한 권리포기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4.6 HSBC 는 청구와 관련하여 불일치가 있음을 고객에 알리고, 고객은 HSBC 그리고/또는 환거래은행 및 대리인에 다음을 요청한다.
- (a)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환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지급을 이행, 또는
  - (b) 불일치 하는 내용을 커버하는 보증서 또는 면책약정서(indemnity)를 발행

고객은 제 9 조(상환 및 면책약정)에 명시된 상환의무 및 면책약정이 해당 청구서 그리고/또는 보증서 및 면책약정서에 적용됨을 확인한다.

- 4.7 HSBC는 고객에게 사전통지의 방식으로, 증서의 약정을 수정하거나 추가 조건을 삽입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HSBC는 고객에게 해당 기간내에 이의제기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HSBC는 수의자의 동의를 받아 증서의 총액 또는 미사용 잔액을 취소 할 수 있다.
- 4.8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HSBC는 보증신용장(SBLC), 통지, 확인의 사용을 HSBC 계열사 또는 HSBC가 선택한 환거래은행 및 대리인으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HSBC는 이들 외의 은행 및 제 3 자에 발행된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을 거부 할 수 있다.
- 4.9 보증신용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에 따라 신용장에 의한 서류가 접수되기 전 수의자에 지급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고객은, 해당 신용장의 만기일 또는 HSBC가 요청하는 만기일 이전의 날짜에 청구금액 전액 (상기 접수된 서류가 해당 신용장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HSBC의 지급일자로부터 만기일자까지 발생한 이자금액, 제 15 조 (수수료와 이자)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금액을 HSBC에 지급하여야 한다.
- 4.10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HSBC에 증서 발행을 요청하였거나 또는 HSBC가 구상보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환거래은행에 의한 증서 발행의 주선을 요청한 경우, HSBC는 동 구상보증에, 증서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약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보증의 유효기간 및 청구기간은 증서의 유효기간 및 청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증서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반영하는 기타 약정이 추가될 수 있다.
- 4.11 갱신 또는 연장 대상인 증서에 대하여, HSBC는 고객이 증서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취소 통지를 위해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5 영업일 전에 HSBC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HSBC는 1년 또는 기타 HSBC가 정하는 기간 동안 증서를 갱신 또는 연장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HSBC는 증서를 발행, 연장 또는 갱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고객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다음을 이행 할 수 있다.
- (a) 해당 증서 또는 증서의 수의자가 취소 또는 폐지를 허용하는 경우 고객에 사전 통지 후 증서를 취소 또는 폐지 또는,
- (b) 해당 증서가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고 취소된 경우 해당 증서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고객에 사전 통지 후 증서에 대한 지급을 이행.
- 4.12 HSBC가 증서를 취소, 지급을 이행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는 본 표준약정에 따라 HSBC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13 청구에 대한 근거로 증서 원본을 HSBC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증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HSBC는 증서 원본이 제시되었음을 불문하고 청구에 대한 지급을 이행 그리고/또는 청구를 준수 할 수 있다.
- 4.14 고객이 증서의 감액, 취소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SBC는 증서의 준거법을 사유로, 동 증서가 감액, 취소 또는 해지되지 않았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동 증서에 따른 HSBC 그리고/또는 환거래은행의 채무 감액, 해제 또는 종료에 대한 해당 수의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결정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또는 HSBC가 상기 확인을 받을 때까지, 해당 증서는 감액, 취소 또는 해지된 것으로 취급 또는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5. 추심(COLLECTIONS)

- 5.1 본 조항의 조건은 모든 추심 거래에 적용된다.
- 5.2 고객이 HSBC 에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의 지위로 추심을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HSBC 는 추심은행(collecting bank) 또는 제시은행(Presenting bank)으로부터 전액 지급을 받을 때까지 고객에 추심과 관련된 지급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 5.3 HSBC 는 서류를 추심은행 또는 제시은행에 송부하기 전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5.4 HSBC 는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6. 금융 및 금융서비스 (FINANCE)

- 6.1 본 조항의 조건은 HSBC 가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에 대한 금융 또는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6.2 HSBC 의 화환신용장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은 무조건적이고 취소불능한 조건으로
- (a)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의 소유권을 HSBC 로 이전하고 해당 서류를 HSBC 앞으로 배서하며(해당 금융 서비스에 대한 조건으로 아직 배서가 되지 않은 경우) HSBC 에 승인 서류 원본을 전달한다.
  - (b) 해당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에 대한 자금 수령 권리를 HSBC 에 전적으로 양도 또는 이전한다. 그리고
  - (c)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및 관련 권리 및 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HSBC 에 전적으로 양도 또는 이전한다.
- 제공 대금을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 액면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HSBC 가 제공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해당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에 대한 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HSBC 는 해당 수령 자금을 고객에게 지급한다(고객의 미결제 부채 금액 차감 후).
- 6.3 HSBC 가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에 대한 금융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사유(또는 HSBC 가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든 해당 발행은행, 확인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어음수취인 또는 채무자로부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HSBC 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이 적용된다.
- (a) 해당 무역서비스는 고객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with full recourse)으로 제공되며,
  - (b) 고객은 미지급금액을 HSBC 에 상환하여야 한다.
- 이러한 상환은 HSBC 의 요청 즉시, 제 15 조 (수수료와 이자)에 따른 이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은 상기 미지급으로 인하여 HSBC 가 입은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6.4 HSBC 가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non-recourse basis)으로 금융 또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합의하였고, 해당 발행은행, 확인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어음수취인 또는 채무자로부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또는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HSBC 가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해당 미지급이 상환 사유로 인한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만 HSBC 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환은 HSBC 의 요청 즉시, 제 15 조(수수료와 이자)에 따른 이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은 상기 미지급으로 인하여 HSBC 가 입은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6.5 HSBC 가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에 대한 금융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HSBC 는 다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 (a) 해당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과 관련된 지급 기일을 준수 그리고/또는 연장하는 것에 대한 조건부 승인
- (b) 만기 전 어음지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할인하여 인수
- (c) 만기 전 일부를 인수하고 그 일부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해당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의 인수자 또는 해당 물품의 수하인(consignee)에게 인도
- (d) 어음지급인의 요청 시, 해당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과 관련된 HSBC 에 대한 고객의 채무에 어떠한 영향 없이,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한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의 제시를 연기
- (e) 서류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해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며, 고객은 제 9 항(상환과 면책약정)에 명시된 상환의무와 면책약정이 그러한 손실보상에 적용됨을 확인
- (f) HSBC 가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의 금액을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의 금액을 해당 인수인 또는 배서인으로부터 구상(recovery)하기 위한 법적 절차 또는 기타 조치를 시작

## 7. 무역관련대출 (TRADE FINANCE LOANS)

7.1 본 조항의 조건은 HSBC 가 고객에 제공하는 모든 무역관련대출에 적용된다.

7.2 무역관련대출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여신거래약정(추가약정서 포함)의 조건에 따라, HSBC 가 고객에 제공하는 무역관련대출은 미확약(uncommitted) 조건이며 HSBC 는 금융사정의 변동, 채권보전등의 사유로 통지에 의하여 무역관련여신을 해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7.3 무역관련대출의 이자는 제 15 조(수수료와 이자)에 따라 부과되고 고객은 이를 지급한다.

7.4 고객은 HSBC 가 서면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요청 시 HSBC 에 발생한 이자, 수수료, 요금, 비용과 함께 각 무역관련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도 고객은 다음 명시된 기한 전에 무역관련대출을 반드시 상환해야한다.

- (a) 해당 여신의 만기일
- (b)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한 경우 고객이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대금 (전체 또는 일부)을 수령하는 날짜 그리고/또는
- (c) 고객에 대한 채무 상환 용인 경우 고객이 해당 부채(전체 또는 일부)의 상환을 받는 날짜

HSBC 의 요청 시 고객은 무역 거래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HSBC 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 해당 무역 금융 및 기타 미결제 부채 상환에 사용되도록 한다.

7.5 무역관련대출의 상환일이 고객이 다른 무역관련대출에 따른 인출을 하는 날인 경우, HSBC 는 다음을 요청 할 수 있다.

- (a) 상환되어야 할 무역관련대출 금액을 인출되는 금액에서 공제하고
- (b) 차액만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7.6 고객이 무역관련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화환신용장 또는 확인된 구매주문서, 견적 송장 또는 신청서에 명시된 기타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무역관련대출 신청서를 제출 시 또는 제출 전에 HSBC 에 원본 화환신용장 (수정본 포함), 확인된 구매주문서, 견적 송장 또는 신청서에 언급된 기타 증빙 서류 ("증빙 서류")를 (HSBC 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제공해야 한다.

7.7 HSBC 가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무역관련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 (a) 해당 대출을 증빙 서류에 언급된 상품의 구매, 생산, 가공, 제조, 저장, 보험 및 판매 또는 선적 준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b) HSBC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증빙 서류의 수정 또는 취소를 수락하지 않는다.
- (c) 해당 상품의 가치 또는 증빙 서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무역관련대출 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 즉시 HSBC 에 통지한다.
- (d) 해당 상품이 증빙 서류의 조건에 따라 선적되지 않은 경우 HSBC 에 즉시 통지한다.
- (e) 증빙 서류가 화환신용장인 경우, 해당 화환신용장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화환신용장 조건에 따라 모든 서류를 HSBC 에 제시한다. 그리고
- (f) 증빙 서류가 화환신용장이 아닌 경우, 해당 상품의 선적 직후 HSBC 에 해당 상품이 관련 판매 계약의 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공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송장 및 기타 서류를 제공한다.

7.8 HSBC 가 고객에게 화환신용장을 담보로 하는 무역관련대출을 제공하고 지급 또는 승인을 위해 HSBC 가 발행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고 화환신용장 또는 동 화환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서류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HSBC 는 화환신용장에 따른 지급 금액을 상기 무역관련대출 및 기타 고객의 부채 (미지급 이자를 포함)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지한다.

## 8. 물품출고, 수입화물선취보증, 면책약정서의 신청 (APPLICATIONS FOR RELEASE OF GOODS, SHIPPING GUARANTEES AND LETTER OF INDEMNITY)

8.1 본 조항의 조건은 물품출고, 수입화물선취보증 또는 면책약정서의 신청에 적용된다.

8.2 고객이 물품출고를 촉진하기 위해, HSBC 에 면책약정서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서명 또는 부서를 요청하거나, 항공화물 운송증, 선하증권, 소포우송수령증, 물품인도지시서 (합하여 "운송서류") 서명, 승인,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

- (a) HSBC 는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의무는 없다).
- (i) 제시된 서류의 검토 없이 그리고 불일치 여부 확인을 불문하고, 화환신용장, 추심 또는 출고되는 물품과 관련된 서류에 따른 청구를 결제(제시된 서류의 인수를 포함)하고 물품에 대한 송장 가격 또는 물품의 가치 (둘 중 높은 금액으로)를 지급, 그리고
- (ii) HSBC 가 수령한 운송서류를 면책약정서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상환에 활용
- (b) 고객은 해당 물품의 지급을 위해 제시된 서류(불일치 여부를 불문)를 즉시 인수하고, 제 9 조 2 항(상환 및 면책약정)에 따라 HSBC 와 기타 면책당사자에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 8.3 물품 그리고/또는 서류는 물품의 인도와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전달된다.
- 8.4 HSBC 는 본 표준약정에 따른 고객의 HSBC 에 대한 배상 및 면책 의무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면책약정,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또는 HSBC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서명, 배서 또는 해제한 운송서류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를 절충, 결제, 지급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 8.5 고객은 해당 운송서류 원본을 수령하는 즉시 취소를 위해 각 면책약정서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HSBC 에 상환하고 이를 전달한다.
- 8.6 고객은 면책약정서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와 관련된 채무는 동 약정서 및 보증서가 HSBC 에 반환되고 HSBC 가 동 약정서 및 보증서에 따른 모든 채무에서 해제될 때까지 지속되며 감액되지 않음에 동의한다.

## **SECTION 2 – 상환, 면책약정 및 기타 권리 (REIMBURSEMENT, INDEMNITY AND OTHER RIGHTS)**

### **9. 상환 및 면책약정 (REIMBURSEMENT AND INDEMNITY)**

- 9.1 고객은 HSBC 의 요청 시 무역서비스와 관련하여 HSBC 가 지급(지급 방식을 불문하고)한 모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며, HSBC 의 요청 시 원금, 이자, 수수료, 증가된 비용, 세금, 관세, HSBC 의 무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을 HSBC 에 지급하여야 한다.
- 9.2 고객은 무역서비스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HSBC, 각 HSBC 그룹계열사, 이들의 임직원 및 위임자 (각각을 “면책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직접, 간접, 결과적 채무 및 손실, 지급, 손해배상, 청구, 비용 (법률 관련 비용, 수의자 또는 기타 제 3 자로부터의 수수료, 청구, 채무 등에 대하여 완전배상을 기본으로), 소송 및 기타 결과 (합하여 “손실”)로부터 면책하여야 한다(이러한 손실이 면책당사자의 사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 또한 고객은 요청 시 면책당사자에 상기 손실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9.3 고객은 면책당사자의 요청 시, 무역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면책당사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고객의 비용으로 즉시 변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면책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9.4 HSBC 는 언제든지, HSBC 그룹 계열사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에서 미지급 상태인 고객의 채무를 인출하거나 또는 고객이 수의자이며 HSBC 가 보유 또는 수령한 금액으로부터 동 채무를 차감 할 수 있다.
- 9.5 HSBC 또는 기타 법인격 (person)이 본 표준약정에 포함된 면책약정 또는 고객의 책임을 변경, 실현, 해제하거나, 시간 면제 및 양보를 허용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과 화해 및 절충을 하거나, 절충계획, 계약

및 합의의 수락 또는 변경에 동의하거나, 또는 지급 청구 또는 이행을 하지 않거나, 무역서비스 조건을 결정, 변경, 감소, 확대하거나, 본 조항을 제외하고, 고객의 의무를 해제 또는 면제시킬 수 있는 사항이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표준약정에 포함된 면책약정이 해제 또는 감소되지 아니하며, 고객의 책임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0. 현금 담보 (CASH COLLATERAL)

- 10.1 고객은 요청 시, 고객의 채무상환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 (또는 HSBC가 동의한 경우 이보다 적은 금액)을 HSBC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현금 담보**).
- 10.2 HSBC가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HSBC가 만족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상기 계좌 및 현금 담보에 대하여 해당 관할권에서 관행으로 간주되는 담보권을 HSBC에 부여한다. 또한 고객은 동 담보권이 완전하여 고객에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 등록, 기록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은행과 고객은 해당 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수료를 부담한다.
- 10.3 고객에 대한 통지로 HSBC는 고객에 대한 지급청구, 무역금융대출 및 모든 채무 상환을 위해 현금 담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계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0.4 HSBC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 (a) 현금담보는 HSBC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고객의 채무 일체가 무조건적 그리고 취소불능으로 상환되고 채무상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HSBC가 고객에 진 채무를 구성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전부 또는 일부) 상환 또는 반환되지 않는다. 그리고,
  - (b) 현금 담보에는 이자가 부리되지 않는다.
- 10.5 고객은 현금 담보 또는 현금 담보가 보관된 계좌 (HSBC 앞으로 된 담보를 제외)에 대해 저당권, 청구, 유치권 또는 기타 담보권리 및 채무를 설정하거나 지속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또는 동 현금 담보 및 계좌를 양도 및 이전해서는 안 된다.

## 11. 질권 (PLEDGE)

- 11.1 고객은 HSBC의 요청 시 고객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 11.2 고객은, 본 서면을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HSBC가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가 의제되는, 또는 HSBC의 통제하에 있거나 HSBC가 수탁자인, HSBC가 처리할 권한이 있는 서류 및 물품 일체(신탁, 추심, 담보, 청구 제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인지, 정상적인 은행 업무에 따라서인지 그리고 관할권 내에서인지 여부를 불문)를 고객 채무에 대한 계속적인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다.
- 11.3 고객은 HSBC가 요청하는 범위에서 고객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의 서류 및 물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증빙하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추가 서류를 체결하는 등)를 하여야 한다.

- 11.4 해당 관할권에서 질권의 이행을 위해 해당 질권(또는 이에 해당하는 바)을 등록, 신고 또는 달리 공식 기록으로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HSBC의 요청 시 질권을 등록, 신고 그리고/또는 공식 기록으로 보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관련 수수료 지급 등)를 취하여야 한다.
- 11.5 담보통합권에 대한 제한은 본 11 조항에 따른 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1.6 서류와 물품에 대한 리스크는 고객에 있으며, HSBC 및 기타 HSBC 그룹 계열사는 고의과실이 없는 한 HSBC가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품의 손실, 손해 또는 가치하락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11.7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고객이 만기일 또는 요청 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b) 고객이 본 표준약정의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
  - (c) 본 표준약정에 따른 고객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
  - (d) 고객이 만기에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해당 관할권의 (법인) 설립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지급불능상태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 (e) 고객이 구조조정, 화의 또는 채권자 한 명 이상과의 기타 정리, 해산, 부도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이러한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 HSBC는 질권을 이행할 수 있으며, HSBC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등에 의하여 서류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현, 매각, 매입 또는 처분 할 수 있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고객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 곧 갚기로 한다.
- 11.8 질권 실행 이후 HSBC가 수령, 보전 또는 실현한 금액 전부는 고객 채무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HSBC의 권리 보호를 위해 HSBC와 고객이 협의한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부리 되는 가계정에 입금될 수 있다.

## 12. 수입화물 대도(TRUST RECEIPTS)

- 12.1 서류 또는 물품과 관련된 무역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고객이 동 서류 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고객에 동 서류 또는 물품이 전달된 경우, 고객은
- (a) 무역서비스와 관련하여 HSBC와 고객간 합의된 목적에 한하여, HSBC를 대신해서 동 서류 또는 물품(그리고 판매 수익 그리고/또는 보험)을 보관한다.
  - (b) 판매금 그리고/또는 보험금을 보관하고, 고객의 다른 재산과 분리된 것으로 구분 될 수 있도록 물품을 저장한다.
  - (c) 고객의 비용부담으로 동 서류와 물품이 계속해서 11 조항의 질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d) HSBC의 요청 시, 양식 및 내용에 있어 HSBC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입화물 대도를 HSBC가 요청하는 기타 서류와 함께 HSBC에 전달한다.

- (e) 동 서류 및 물품과 관련된 HSBC 의 지시서 또는 요청을 신속히 이행한다.
- (f) 수령 즉시 물품 판매금 그리고/또는 보험금을 HSBC 에 지급한다.
- (g) HSBC 는 물품, 서류 그리고/또는 동 물품의 판매금 및 보험금을 점유하고 처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13. 상계 (SET-OFF)

- 13.1 HSBC 는 지급 장소, 부기 지점 및 통화를 불문하고, 통지에 의하여 HSBC 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를 통합 그리고/또는 고객의 부채와 HSBC 가 고객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현금 담보 또는 HSBC 가 수령 또는 보유하고 있는 수익 등)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13.2 HSBC 는 상계 이행을 위해 상이한 통화로 되어있는 금액을 해당 환율로 환전 할 수 있다.

### 14. 추가 권리 (SUPPLIMENTARY RIGHTS)

- 14.1 본 표준약정에 따른 HSBC 의 권리는 HSBC 가 현재 또는 결과적으로 고객 등으로부터 보유한 하나 이상의 기타 면책약정서, 보증서, 증권 또는 기타 채무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에 의해 침해되거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SECTION 3 – 수수료와 지급 (FEES AND PAYMENTS)

### 15. 수수료와 이자 (FEES, COMMISSION, INTEREST AND CHARGES)

- 15.1 고객과 달리 서면으로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
  - (a) 고객은 각 무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이자와 커미션을 제외)를 해당 신청서, 대출 약정서, 또는 요율표에서 합의한 수수료율, 금액, 횟수에 따라 HSBC 의 표준관행에 따라 HSBC 에 지급하여야 한다.
  - (b) 고객은 무역금융대출과 관련하여 HSBC 가 요청하는 즉시 HSBC 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이자는 HSBC 가 동 대출을 제공하는 날(당일 포함)로부터 동 대출이 전액 상환되는 날(상환 당일 제외)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무역금융대출 금액에 대하여 부리 된다. 또한 동 이자는 해당 신청서, 대출 약정서, 또는 요율표에서 합의하였거나 HSBC 의 표준관행에 따른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c) 고객은 HSBC 가 지급한 청구액과 관련하여 HSBC 가 요청하는 즉시 HSBC 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이자는 HSBC 가 청구금을 지급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동 청구금으로 발생된 고객 채무가 전액 상환되는 날(상환 당일 제외)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청구금액에 대하여 부리 된다. 또한 동 이자는 해당 신청서, 대출 약정서, 또는 요율표에서 합의하였거나 HSBC 의 표준관행에 따른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d) 고객은 화환신용장 또는 증서와 관련하여 HSBC 가 요청하는 즉시 HSBC 에 커미션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커미션은 해당 신청서, 대출 약정서, 상품설명서, 이메일등 서신을 통해 별도로 합의하거나 요율표에 고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15.2 무역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 및 이자는 일별로 부리되 365 일을 1년으로 하여 실제 경과한 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하거나, 해당 관할권의 시장 관행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행에 따라 산출한다.
- 15.3 고객이 HSBC 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및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 15.4 고객이 본 표준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해당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동 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청서, 대출 약정서, 또는 요율표에서 합의하였거나 HSBC 의 표준관행에 따른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체이자가 부리된다.

## 16. 지급 (PAYMENTS)

- 16.1 고객은 HSBC 에 지급 시 즉시 인출 및 이체 가능한 자금으로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상계나 공제, 원천징수 또는 기타 제약을 받지 않는 HSBC 가 특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16.2 무역 서비스와 관련하여 HSBC 에 지급되는 모든 금액은 세금 불포함 기준으로 표시된다. 고객은 HSBC 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에 적용되는 세금(이러한 세금이 있는 경우)을 납부하여야 한다.
- 16.3 법률에 따라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세금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 고객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지급총액을 인상하여, 해당 공제 또는 원천징수 이후에도 HSBC 가 동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수령하게 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며,
- (b) 해당 지급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HSBC 에 상기 공제 또는 원천징수 처리에 대한 해당 조세당국의 서면 증빙을 HSBC 에 송부한다.
- 16.4 HSBC 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의 HSBC 에 대한 지급은 해당 지급과 관련된 고객 부채의 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은 관할권 내에서 다른 통화로 그러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HSBC 가 고객 등으로부터 해당 지급과 관련된 부채의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을 받거나 HSBC 가 미지급 고객 부채 상환을 위해 현금 담보를 환전하여야 하는 경우, HSBC 는 이러한 환전 시 해당 환율을 사용하여(또는 고객과 HSBC 간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한 해정 계약 약정에 따름) 환전을 한다. HSBC 가 본 약관에 따른 환전을 하는 경우 HSBC 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환전 과정에서 HSBC 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실 또는 부채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 16.5 고객이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 또는 동 금액과 관련된 명령, 판결 또는 지급판정이 고객 등에 대한 청구 또는 증빙 제시, 명령, 판결 또는 판정 획득 및 이행을 위해 다른 통화로 환전되어야 하는 경우, HSBC 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이러한 환전으로 인하여 HSBC 에 발생한 비용, 손실 또는 채무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 16.6 본 표준약정, 무역 서비스 또는 본 표준약정에 언급된 서류에 따른 이율 또는 금액에 대한 HSBC 의 통지 또는 결정은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동 이율 또는 금액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된다. 본

표준약정 그리고/또는 무역 서비스와 관련된 소송 절차에서, HSBC 의 이러한 장부 입력은 해당 사안에 대한 일단의 증거가 된다.

- 16.7 고객 채무와 관련하여 HSBC 에 지급된 금액은 채무 변제에 활용되거나 HSBC 가 고객 채무 전액의 이행을 위한 HSBC 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HSBC 와 고객이 협의한 기간 동안 별도의 가계정에 예치 할 수 있다.
- 16.8 HSBC 는 수령한 금액을 (법률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처리 하여야 한다.
- (a) 먼저 고객대신 HSBC 가 부담한 모든 비용(법률 비용을 포함) 및 수수료를 충당한다.
  - (b) 두 번째, HSBC 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또는 기타 금액 (원금 제외)을 변제한다.
  - (c) 세 번째, 고객이 HSBC 에 지급하여야 하는 원금을 변제한다.
- 16.9 고객 채무와 관련하여 HSBC 에 지급된 금액이 지급불능, 파산, 청산 등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상환되어야 하는 경우, HSBC 는 해당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본 표준약정 및 해당 무역 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다.
- 16.10 지급일이 비 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을 지급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와 커미션 역시 이에 따라 산출하도록 한다.
- 16.11 고객이 무역 서비스와 관련하여 HSBC 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공표된 지표 금리를 기반으로 산출되고 산출 시점에 해당 금리가 0% 미만인 경우 동 금리는 0%인 것으로 간주한다.

#### **SECTION 4 – 진술, 이행약속 및 제재 (REPRESENTATIONS, UNDERTAKINGS AND SANCTIONS)**

##### **17. 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17.1 고객이 HSBC 에 한 기타 진술 및 보증과 더불어, 고객은 HSBC 에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 (a) 고객은 (법인) 설립지를 관할하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하고 자산을 소유하며 본 표준약정을 체결, 본 표준약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고객의 정관 또는 존속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HSBC 에 통지하여야 한다.
  - (b) 본 표준약정 및 고객이 체결하는 각 무역 거래에서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합법적이며,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며, 이행 가능한 의무이다.
  - (c) 본 표준약정 및 각 무역 거래를 적법하게 체결하고, 동 약정 및 거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 동의, 승인, 결의, 라이선스, 면제, 신고, 공증 또는 등록 일체를 취득하였고 이들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d) 본 표준약정 및 고객이 체결하는 각 무역 거래는 고객의 법률 문서 또는 고객 또는 고객의 자산에 구속력을 발휘하는 계약서 및 기타 법률 문서와 상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계약서 및 법률문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계약종료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e) 고객이 요청한 또는 고객을 위한 각 무역 서비스는 해당 무역거래와 관련된 문서에 명시된 무역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고객이 각 무역 서비스 또는 본 표준약정과 관련하여 HSBC에 제공한 문서 및 정보 일체(신청서를 포함)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진정하며 유효하다.
  - (f) 고객은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조치(corporate action)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는 고객의 청산, 법정 관리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위한 또는 고객의 자산 및 수입의 주요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법적 경영인, 청산인 및 기타 유사한 관리자를 임명하기 위한 기타 조치 및 절차가 개시된 적이 없다.
  - (g) HSBC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서류, 물품 또는 판매 수익은 담보권 및 저당권(HSBC 앞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고객은 이러한 서류, 물품 또는 판매수익에 대한 유일한 실제소유자이다.
  - (h) HSBC가 고객에게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고객은 해당 서류, 신용장 또는 무역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계류 또는 위협 중인) 분쟁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 (i) HSBC가 고객에게 서류 또는 화환신용장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고객은 해당 서류, 신용장 또는 무역 거래와 관련하여 HSBC 이외의 자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
- 17.2 본 표준약정의 모든 진술 및 보증은 (a) 신청서가 작성 및 처리 되고 (b) 무역 서비스가 처리 전이며 (c) 고객 채무가 미해결된 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 17.3 고객은 HSBC가 무역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고객의 진술과 보증을 신뢰할 것임을 인정한다.
- 17.4 고객은 진술 및 보증 내용이 변경되거나 진술 및 보증을 지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인지한 즉시 HSBC에 이를 알려야 한다.

## 18. 동의 (UNDERTAKINGS)

### 일반 동의사항

- 18.1 고객은 HSBC의 요청 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a) HSBC가 요청하는 무역 거래 관련 정보(판매 계약서, 구매 주문 및 송장 사본 등), 서류 및 물품, 물품 판매 제안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유와 관계없이 무역 거래가 취소 또는 해지되거나 무역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HSBC에 통지.
  - (b) HSBC가 요청하는 고객 및 고객 계열사의 재무 현황, 자산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c) HSBC가 "고객 알기(KYC)" 또는 이에 해당하는 신원확인 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 (d) 물품의 소재지, 물품의 상태, 품질, 수량 관련 변경사항을 HSBC에 통보

- (e) 법률 소송 등에 의해 무역 서비스에 따른 또는 이와 관련된 추심 및 지급 이행에 대해 HSBC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
- (f) HSBC 가 다음 명시된 바를 위해 특정하는 행위 및 문서를 고객의 비용으로 즉시 이행 및 서명
  - (i) 본 표준약정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현금 담보, 서류, 물품 또는 판매 수익과 관련한 경우 등을 포함) 부여된 또는 부여되는 이자의 창출, 완결, 보호 또는 유지
  - (ii) 본 표준약정 또는 법률에 따른 또는 이와 관련한 HSBC 의 권리, 권한, 구제책의 행사
  - (iii) HSBC 가 이해관계가 있는 서류 또는 물품의 실현을 촉진

### **무역서비스 관련 동의사항**

- 18.2 고객은 무역서비스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또는 HSBC 가 화환신용장, 서류, 물품 또는 관련 판매 수익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a) 화환신용장, 서류, 물품 또는 관련 판매수익이 저당권, 청구, 유치권 또는 기타 담보권리, 채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단 HSBC 앞으로 된 또는 HSBC 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신탁, 질권 또는 기타 형태의 담보는 제외한다.
  - (b) 고객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또는 무역 서비스에 대한 조건으로, 고객이 물품에 대한 보험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
    - (i) 상기 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부보 가능한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러한 조건이 없는 경우 관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다.
    - (ii) 해당 무역 서비스 신청일 이후 즉시(어떤 경우든 10 일 이내) 보험 증권의 사본을 HSBC 에 제공한다. 그리고,
    - (iii) 해당 보험 증권에 대한 모든 청구를 즉시 HSBC 에 통지하며, 보험 회사가 물품과 관련된 모든 보험 수익을 HSBC 에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 (c) HSBC 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에 대한 HSBC 의 이해관계가 보험 증권에 기입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동 물품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HSBC 에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 (d) 물품 및 미결제 지급금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HSBC 에 지급하고, 동 보험금을 HSBC 를 위해 보관한다.
  - (e) 모든 서류를 HSBC 앞으로 배서하고, HSBC 에 모든 서류를 맡기거나 HSBC 의 지시대로 서류를 관리하고 모든 서류와 물품에 대한 HSBC 의 이해관계를 기록해둔다.
  - (f) 서류 그리고/또는 물품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화물, 창고, 부두, 수송 등에 대한 수수료), 임차료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한다.
  - (g) HSBC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물품이 처리 또는 변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h) 물품의 가치 또는 본 표준약정에 따른 질권 및 신탁의 효력을 침해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 (i) 구매자의 물품 구매 완료의 책임에 차질을 줄 수 있거나 물품 상태 및 품질의 변경 또는 악화를 인지하는 경우 이를 즉시 HSBC 에 통지한다.
- (j) 물품이나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도난, 사기, 불법 활동, 손실, 손상 또는 기타 오용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즉시 HSBC 에 통지한다.
- (k) 물품 조사, 점유 또는 기타 물품의 권리 보호를 위해 HSBC (또는 HSBC 의 대리인)에 물품이 보관 또는 소재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 (l) 서류, 물품 또는 판매 대금, 화환신용장(또는 확인(개설은행에 고지여부를 불문))을 팩토링, 이전, 매도, 처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한다. 단, 무역 서비스에 대하여 HSBC 와 고객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m) 다른 은행, 금융기관 또는 유사한 금융단체에 서류를 제시하거나 동일한 무역 거래에 대한 금융서비스 그리고/또는 차입을 받지 아니한다
- (n) HSBC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화환신용장, 보증신용장(SBLC) 또는 서류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o) HSBC 가 서류 또는 물품과 관련하여 제공한 보증서, 면책약정 또는 기타 확약에서 신속히 해제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HSBC (또는 HSBC 의 대리인)는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의 비용으로, 물품을 선적, 수거, 운송, 저장, 부보 또는 조사 그리고/또는 판매금을 요구 및 추심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급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19. 법규준수와 제재 (COMPLIANCE WITH LAWS AND SANCTIONS)

### 19.1 고객은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 (a) 고객과 고객의 자회사, 이사, 임직원, 대리인, 계열사는 다음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소유 및 통제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니다:
  - (i)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미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유럽 연합, 영국 재무부, 홍콩금융감독청 또는 HSBC, 고객, 무역 서비스, 무역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제재를 발표 및 시행하는 기타 기관이 발표 또는 시행한 제재("제재")의 대상 또는
  - (ii) 해당 국가 또는 영토 또는 그 정부가 제재 대상인 국가 또는 영토에 소재하거나, 조직되어 있거나 거주
- (b) 각 무역 거래에 필요한 수출입 허가를 받았으며, HSBC 가 고객에 무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출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고객은 이를 HSBC 가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HSBC 에 통지한다..

- (c) 고객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각 관할권, 그리고 무역 거래 및 무역 거래의 주요 내용(해당 거래 또는 관련 문서에 명시된 물품의 운송 및 자금조달 등)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를 준수한다.

19.2 고객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 (a) HSBC 그룹과 동 그룹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제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뇌물 및 부패, 탈세 방지 등과 관련된 여러 관할권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b) HSBC는 언제든지 고객에 무역 거래 관련 정보(기본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 등)를 즉시 제공 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c) HSBC는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재 또는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법규준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타 HSBC 그룹 계열사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규준수 조치에는 다음 명시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다.
- (i) 지급, 서신이나 통신 또는 지시서의 차단 및 조사
  - (ii)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재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 질의 그리고/또는
  - (iii) 다음 명시된 사항을 거절:
    - (A) 무역 서비스 발행, 갱신, 연장, 이전 및 양도
    - (B) 청구금 지급 또는
    - (C) 제재 또는 국내외 법규에 어긋나는 무역 서비스 및 지시서 처리
- (d) HSBC와 HSBC 그룹 계열사는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 손해, 지연 또는 본 표준약정 또는 무역 서비스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i) HSBC, HSBC의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HSBC 그룹 계열사가 취한 법규준수 조치 그리고/또는
  - (ii) 관련 법규 또는 정부 기관의 판결로 무역 서비스와 관련된 청구금 지급이 금지되거나, 무역 서비스와 관련된 메시지 및 데이터 송수신 또는 기타 조치 이행이 금지된 경우.

## SECTION 5 – 지시서와 전자 플랫폼 (INSTRUCTIONS AND ELECTRONICS PLATFORMS)

20. **지시서 (INSTRUCTIONS)**

20.1 HSBC는 다음을 유효하고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락하고 이에 기반하여 조치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

- (a) 고객이 HSBC에 전달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요청서 및 지시서 (신청서를 포함) (**지시서**)

(b) 모든 청구서

(c) HSBC에 제공된 서류

(각각의 경우, 플랫폼, 이메일, 팩스, 텔리팩시밀리, 텔렉스, 케이블, 전화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달된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지시서, 청구서, 서류의 권한 및 유효성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

20.2 고객은, 전자적 수단으로 HSBC가 전송 또는 HSBC로부터 전송된 서신 및 통신, 지시서, 청구서 및 문서가 차단, 모니터, 수정, 변질되거나 바이러스를 포함, 또는 제3자의 개입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인정하고 이를 수락하며, 또한 HSBC는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고객은 동 손실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함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20.3 만일 고객이 전자적 방식으로 지시서를 송부, 청구를 제기 또는 서류를 제공하거나 HSBC에게 수의자 또는 기타 개인에 이를 허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고객은 요청 시 HSBC에 발생한 모든 손실(권한이 없는 지시서 또는 청구서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4 고객이 계열사에 무역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a) 고객은 HSBC가 해당 계열사로부터 지시서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해당 계열사를 대신하여 고객과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동 계열사의 서면동의서를 징구)한다.

(b) "무역거래"의 정의는 고객이 아닌 계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서류" 및 "물품"의 정의 역시 이에 따라 해석된다.

(c) 본 약정서에서 관련 서류, 물품 또는 판매 대금을 제시, 취급, 처분, 양도, 취급 또는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언급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계열사를 포함한다.

(d) 고객은 관련 무역 거래, 서류, 물품 및 판매 대금과 관련하여 계열사가 본 약정서에 명시된 약속을 모두 준수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e) 본 약정에서 고객이 한 진술은 고객 본인을 위해 그리고 계열사를 대신하여 한 것이며, (실제 상황에 의해) 제휴사에 한한 진술일 경우 고객은 계열사를 대신하여 진술한다.

20.5 HSBC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a) 전자적 수단으로 지시서를 송부, 청구를 제기 또는 서류를 제공하는 자의 신원 또는 권한을 확인

(b) 전자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지시서, 청구서 또는 서류에 날인된 서명(전자 서명 등)의 진위 확인

(c) 전자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지시서, 청구서 또는 서류에 따라 조치하기 전 고객의 승인 획득

그러나 HSBC는 지시서, 청구서 또는 서류의 유효성, 진위 및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지시서에 대한 전화 확인 요청을 포함) 및 외부 플랫폼제공업체가 지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지시서, 청구서 또는 서류의 유효성, 진위 및 출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지시서, 청구서 또는 서류에 따른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무역 서비스를 중단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21. 플랫폼 (PLATFORMS)

21.1 고객은 다음 명시된 바를 인정하며 이에 동의한다.

- (a) HSBC는 본 표준약정(또는 기타 해당 약관)에 따른 의무 수행과 무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플랫폼 제공을 외부 플랫폼제공업체에 의뢰 할 수 있다.
- (b) 외부 플랫폼제공업체는 HSBC로부터 독립적인 상태이며, 독립적으로 고객에 플랫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고객은 동 사용료를 단독 부담한다.
- (c) 본 표준약정 및 무역 서비스에 따른 HSBC의 의무는 외부 약관(External Terms and Conditions)에 따른 HSBC의 권리와 외부 플랫폼제공업체가 제공하는 플랫폼의 용이성에 따라 결정된다.
- (d) HSBC는 고객에 외부 약관에 대해 통지하거나 동 약관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e) HSBC는 외부 플랫폼제공업체가 데이터 및 메시지 처리와 전송을 위해 제공하는 플랫폼의 전자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f) 고객은 무역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플랫폼에 적용되는 외부 약관 또는 수수료에 대해 HSBC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HSBC에 통지한다.
- (g) HSBC가 고객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21.2 HSBC는 다음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 또는 제 3 자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a) 어떠한 사유로든 플랫폼이 고객, HSBC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 (b) 고객의 플랫폼 사용 및 연결, 외부 플랫폼제공업체 사용 및 연관성 또는 플랫폼과 관련하여 HSBC나 외부 플랫폼제공업체가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 및 연관성.

21.3 고객은

- (a) HSBC와 각 외부 플랫폼제공업체의 보안 절차 일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위반 시 취해야 할 조치 등 HSBC 또는 외부 플랫폼제공업체가 플랫폼 보안과 관련하여 고객에 합리적으로 요청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b) 각 플랫폼과 고객의 전산 및 통신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관한 모든 보안 계획을 설정,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각 플랫폼의 보안 계획을 평가하여 동 계획이 고객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 (c) 각 플랫폼의 악의적 또는 무단 사용 및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d) 고객과 고객의 직원이 플랫폼 또는 시스템의 보안 또는 HSBC의 보안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 승인되지 않은 지시서 이행을 위한 플랫폼 무단 접근 (또는 접근 시도) 및 승인되지 않은 거래 (또는 거래 시도)를 인지하는 즉시 HSBC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는 반드시 전화로 먼저 연락한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 **SECTION 6 – 기타 (OTHER)**

### **22. 책임 제한 (LIMITATION ON LIABILITY)**

- 22.1 HSBC 와 HSBC 그룹의 기타 계열사는 고의 또는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표준약정 또는 무역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객(또는 고객의 계열사)이 입은 손실, 손해, 지급, 요구, 청구,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2.2 제 22 조 1 항과 제 22 조 2 항에 대한 제한 없이, 은행의 고의 내지 과실이 없는 한 HSBC는 다음 명시된 바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고객은 HSBC에 대한 청구권 일체를 포기한다.
- (a) 제 3 자 또는 환거래 은행에 대한 문서 전송 및 지급과 관련된 작위, 부작위, 손실 또는 지체, 또는 환거래 은행의 미결, 작위, 부작위,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 (b) 플랫폼 또는 통신 채널을 통해 전자 메일로 송부된 메시지, 서한 또는 서류가 송부 과정에서 지체 그리고/또는 분실되거나, 제 3 자의 서신 및 통신 전송 또는 전달에서 발생한 지체, 훼손 또는 기타 오류. 고객은, 반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HSBC는 서류 전송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c) HSBC에게 통제권이 없는 통신, 데이터 연결, 전산 시스템 및 서비스 두절, 오류 또는 이용 불능, 전쟁, 교전, 침공, 소요사태, 파업, 직장폐쇄 및 기타 산업 쟁의, 무역 분쟁(HSBC 직원 또는 제 3 자 관련 여부와 무관), 법원 또는 정부 명령(법적 효력 여부와 무관) 등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이행 되는 경우.
  - (d) 국내외 법규, 국내외 법원 및 정부 기관의 판결 또는 해석으로 인해 HSBC가 청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HSBC의 조치 이행 및 미이행.
  - (e) 해당 서류가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동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서명 및 승인자((고객 또는 수익자의 권한으로 HSBC에 제시, 요구 또는 지시서를 송부(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하는 자 등)의 권한, 위조 및 변조 또는 법적 효력.
  - (f) 플랫폼 또는 무역거래 당사자로부터 작성, 제시, 수령된 정보, 서류 또는 내역서, 관련 서류의 출처, 정확성, 유효성, 진위, 위조 또는 법적 효력, 이러한 정보, 서류 또는 내역서에 기재된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이행 사항의 설명,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전달, 가치, 존재여부, 또는 무역거래 당사자, 송화인, 운송인, 운송중개인, 수화인, 보험사 등의 성실, 작위 및 부작위, 지불능력, 이행능력 또는 업태.
  - (g) 무역 거래와 관련된 거래의 위반 등 수익자의 부적절한 행위, 이 경우 고객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h) 고객이 HSBC로부터 받은 통지대로 조치하거나 이를 의지하는 경우 (고객이 이러한 통지를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무관).

22.3 증서 및 화환신용장 발행, 지급, 물품 및 서류 처리, 본 표준약정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른 당사자나 환거래은행, 대리인의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HSBC는 이를 고객의 계정으로 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는 고객이 부담하며, 은행의 고의 내지 과실이 없는 한 HSBC가 다른 당사자에 송부한 지시서가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이 당사를 선택한 자가 HSBC인 경우에도 HSBC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동 당사자의 이행, 불이행, 채무불이행, 중단, 부도, 파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2.4 고객의 요청으로 HSBC가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 이러한 검토는 최종적 또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HSBC는 이러한 검토 시 불일치 하는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2.5 HSBC가 발행자가 은행이 아닌 화환신용장 및 증서를 통지하기로 하거나 이러한 화환신용장 및 증서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시 또는 동 화환신용장 및 증서를 처리하기로 한 경우, 고객은 다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 (a) 이러한 화환신용장 및 증서는 독립적인 제 3 자 확약이 아닐 수도 있으며 발행자 또는 신청자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을 수도 있다.
- (b) 관련 ICC 규칙이 이러한 화환신용장 및 증서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c) HSBC는 은행이 발생한 화환신용장 및 증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행자의 지급을 모색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 (d) 고객은 독립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은 이와 같은 리스크 일체를 부담하며, HSBC가 상기와 같은 화환신용장 및 증서를 통지하였음을 고객에 알리지 않았거나, 은행이 발행한 화환신용장 및 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기 화환신용장 및 증서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기 화환신용장 및 증서의 발행인으로부터 추심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함하여, 상기 화환신용장 및 증서와 관련된 손실, 손해, 비용, 수수료, 청구, 조치, 요구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 내지 과실이 없는 한 HSBC에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 23. 공개, 기밀유지 및 정보보호 (DISCLOSURE, CONFIDENTIALITY AND PRIVACY)

23.1 고객과 HSBC 및 HSBC 그룹계열사 간 기타 약정에 대한 제한 없이, HSBC는 다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a) 본 표준약정 및 무역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자를 HSBC의 환거래은행, 지정자 또는 대리인으로 정하여, 본 표준약정 및 무역 서비스에 따른 HSBC의 권한을 해당 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b) 다른 자에게 서류, 물품 또는 판매 수익에 대한 HSBC의 이해관계를 통지 할 수 있다.
- (c) 다음 명시된 수령자에게 고객 정보를 이전하고 공개 할 수 있다(이러한 수령자는 동 고객 정보를 처리, 이전,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 제공에 있어 채무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 (i) HSBC 그룹 계열사
- (ii) HSBC 그룹의 하도급 업체, 환거래 은행, 지정자, 대리인, 서비스 제공 업체(외부 플랫폼제공업체 및 플랫폼을 포함) 또는 HSBC 그룹의 관련자(임직원, 이사 등)
- (iii) 당국
- (iv) 고객을 대신하는 자, 지급금 수령인, 수익자, 계좌 지명인, 중개인, 환거래 및 대리 은행, 어음교환소, 청산 및 결제 시스템, 시장 거래상대방, 원천징수의무자, 스왑 및 거래 저장소, 주식 거래소, 고객이 증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HSBC 가 고객을 위해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v) 무역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분을 획득하였거나 리스크를 부담하는 당사자
- (vi) 신용 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는 기타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 조사기관
- (vii) 보험회사 또는 중개업체 그리고/또는
- (viii) 무역서비스가 제공되는 관할권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할권을 포함하여 그 소재지에 관계없이, HSBC 그룹의 영업 이전, 처분, 인수 합병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지정, 통지, 이전 또는 공개의 수령자가 해당 관할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 23.2 HSBC 는 외부업체의 고객정보 수집, 사용, 공개에 대한 외부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HSBC 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3.3 고객이 HSBC 에 자연인(수권 서명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 경우, 고객은 해당 자연인이 고객에 이를(그리고 본인을 대신하여 정보보호를 받을 것을) 허용하였으며 HSBC 가 본 표준약정에 따른 조치 이행 및 고객을 위한 무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이용, 저장, 처리, 이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23.4 고객은 HSBC 에 제 3 자 전달을 요청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HSBC 에 대한 어떠한 청구(평판 손상, 정보보호, 은행기밀정보보호 또는 기타 제 3 자 권리 침해와 관련된 청구 등)를 초래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은 HSBC 가 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그리고/또는 면제를 획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 24. 기타 (MISCELLANEOUS)

- 24.1 취소불능 조건으로 제공되는 무역 서비스를 제외하고, HSBC 는 언제든지 무역서비스를 철회하거나 제공을 거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4.2 본 표준약정 또는 무역 서비스와 관련된 HSBC의 포기, 면제, 동의는 서면으로 작성(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음)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 24.3 HSBC는 고객이 본 표준약정 또는 무역 서비스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고객의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와 지급을 이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4.4 HSBC가 본 표준약정 또는 무역서비스와 관련된 권리 또는 구제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라도, 이는 동 권리 또는 구제방안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동 권리 또는 구제방안의 부분적인 이행으로 추가적 이행 또는 기타 권리 및 구제방안 이행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 24.5 고객은 본 표준약정 또는 무역 서비스에 따른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또는 이전 할 수 없다. HSBC는 제약이나 통지 없이 본 표준약정 또는 무역 서비스에 따른 권리를 양도, 이전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담보를 설정 할 수 있다.
- 24.6 20 조(지시서)에 대한 침해 없이, 본 표준약정 또는 무역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HSBC에 통지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HSBC가 고객에 가장 최근 알려준 주소로 하여야 한다. HSBC가 고객에 통지 할 경우, 직접 대면, 전화 및 팩스, 우편, 플랫폼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고객이 합의한 경우 고객이 HSBC에 가장 최근 알려준 주소나 번호로 기타 전자 채널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우편으로 송부된 통지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객이 주소변경을 게을리 함에 따라 발송한 우편이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24.7 본 표준약정의 각 조항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만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불법, 무효, 불이행 상태가 되는 경우 이는 나머지 조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4.8 만일 고객이 두 명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이들은 본 표준약정 또는 무역 서비스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24.9 본 표준약정의 어떠한 부분도 HSBC와 고객간 동업자, 합작투자, 본인-대리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어떠한 신탁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 24.10 본 표준약정은 고객, HSBC, 각 HSBC 그룹 계열사를 위한 것이며, 기타 제 3 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며, 기타 제 3 자에 의해 이행 될 수 없다. 본 표준약정 또는 본 표준약정이 일부를 구성하는 계약을 종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HSBC의 권리는 제 3 자의 동의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 25. 준거법과 관할권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 25.1 무역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 (a) 무역 서비스와 본 표준약정은 준거법에 따라 규율 되며,
- (b) 관할권의 법원은 무역 서비스와 본 표준약정과 관련한 분쟁, 해석 또는 이와 관련된 비계약적 의무 해결에 대한 비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 25.2 무역 서비스 신청서 또는 대출 계약서에 송달 대리인(process agent)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름과 주소가 등 신청서 또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송달 대리인의 서비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구성한다.
- 25.3 고객이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HSBC의 요청 시, 고객은 5 영업일 이내에 본 표준약정과 고객에 대한 무역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행하는 (관할권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당 송달 대리인의 주소를 HSBC에 통지한다. 만일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HSBC는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의 비용으로 송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고객에 통지한다.

## **SECTION 7 – 용어 정의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 **26. 용어 정의 및 해석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26.1 본 표준약정에서 쓰이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신청**이란, 고객이 무역서비스를 위해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여신거래약정(Facility Agreement)에 따라, 또는 플랫폼(Platform)을 사용하여 신청 및 요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이란 HSBC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관할권을 가진 사법, 행정, 공공 및 감독 기관 (자치규율조직), 정부, 조세당국, 증권 및 선물 거래소, 법원, 중앙은행, 사법집행기구, 이들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동시개설신용장(Back-to-Back Documentary Credit)**이란 제 3 조 14 항 (화환신용장)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영업일**이란, 관할권에서 일반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현금담보**란 제 10 조(현금담보)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청구**란 수익자, 제 3 자 또는 고객이 무역서비스와 관련하여 하는 지급 또는 인수 및 지급 요구 또는 요청, 주장, 제시 및 인출 청구를 의미한다.

**추심**이란 HSBC 가 고객을 위해 이행하는 추심 거래로, 추심에 포함된 화환신용장은 인수(D/A), 지급(D/P) 또는 기타 약정에 따라 HSBC 또는 추심은행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법규준수 활동**이란 제 19 조(법규준수와 제재)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국가별 부속계약**이란 해당 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HSBC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에 적용되는 추가 약정을 의미한다.

**고객**이란 해당 무역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 그리고 HSBC 가 무역서비스(및 해당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 포함) 제공과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는 자를 의미한다. HSBC 가 고객이 아닌 자에게 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약정서에서 "고객"에 대한 언급은 HSBC 의 고객이 아닐지라도 HSBC 가 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고객 정보**란 고객 또는 무역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HSBC 그룹 계열사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 기밀정보 그리고/또는 조세 정보 (수반되는 내역서, 권리포기문서, 동의서를 포함)를 의미한다.

**고객 채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통화, 고객의 채무자로서의 자격, 현재 또는 향후, 실제 또는 우발, 직간접, 단독, 공동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HSBC 또는 HSBC 그룹계열사에 대한 고객의 모든 채무(무역서비스에 따른 또는 동 서비스와 관련한 채무를 포함).
- (b) 이러한 채무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급되었을 채무에 대하여 HSBC 또는 HSBC 그룹계열사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짜까지 고객에 적용되는 이율로 산출한 이자 (요구 또는 판결 전 후)
- (c) 고객이 기한이 도래하거나 지급 요청이 이루어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HSBC 또는 HSBC 그룹 계열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무역 서비스에 따른 지급을 이행(그러나 HSBC에 이러한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그리고,
- (d) HSBC 또는 HSBC 그룹계열사가 무역서비스와 본 표준약정에 따른 권리를 이행하는 데 수반된 비용 일체.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란 신용장 또는 신용장(동 신용장의 연장, 갱신 또는 수정을 포함)을 발행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한다.

**서류**란 HSBC가 고객에 제공한 무역 서비스에서의 무역 거래와 관련된 어음,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권리 증서, 증명서, 송장, 명세서, 운송서류, 무역증권, 창고화물 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증서를 의미한다.

**전자적 수단**이란 제 20 조(지시서)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환율**이란 해당 시점에 해당 외환시장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통화를 사용하여 필요 통화를 매입하는데 적용되는 HSBC의 현물환율을 의미한다.

**외부 플랫폼제공업체(External Provider)**란 HSBC 그리고/또는 고객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 3자를 의미한다.

**외부 약관(External Terms and Conditions)**이란 HSBC 또는 고객의 플랫폼 사용 조건을 명시하기 위하여 외부 플랫폼제공업체와 HSBC 또는 고객간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여신거래약정(Facility Agreement)**이란 HSBC가 고객에 무역금융대출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대출 약정서 또는 대출 계약을 의미한다.

**금융 또는 금융서비스(Finance)**란 서류(화환신용장 또는 추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무관) 및 화환신용장에 대한 할인, 매입, 선납, 조기지급, 배서등을 의미한다. 무역관련대출은 제외된다.

**물품**이란 HSBC의 무역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상품을 의미한다.

**관할권**이란 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HSBC 계열사가 소재한 관할권 또는 고객과 HSBC 간 서면으로 합의하였거나 해당 국가별 부속계약에 명시된 관할권을 의미한다.

**HSBC** 란 해당 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HSBC 그룹 계열사, 그 후임자, 양수자를 의미하며, 문맥상 통하는 경우, 제 23 조 1 항 (a) (기밀유지)에 따라 HSBC 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HSBC 그룹**이란 HSBC Holdings plc 와 그 자회사 및 계열사를 의미한다.

**ICC** 란 국제상업회의소를 의미한다.

**증가된 비용(Increased Costs)**이란 본 표준약정 또는 무역서비스에 따른 HSBC 의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HSBC 에 발생하는, 무역 서비스 수익률 또는 HSBC 전체 자본의 감소, 비용 추가, 본 표준약정 또는 무역 서비스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의 감소를 의미한다.

**면책당사자**란 제 9 조 (상환과 면책약정)에서 '면책당사자'로 정의한 바를 의미한다.

**지시서**란 제 20 조 (지시서)에서 '지시서'로 정의한 바를 의미한다.

**증서**란 SBLC, 청구보증 (특별보증(avalisation), 신용장 공동 인수 또는 인수 등을 포함), 채권, 구상 보증(counter-guarantee, counter-SBLC), 또는 이와 유사한 독립적인 지급의무(상기의 연장, 갱신, 수정 등)를 의미한다.

**손실**이란 제 9 조(상환 및 면책약정)에서 '손실'로 정의한 바를 의미한다.

**마스터 화환신용장**이란 제 3 조 14 항 (화환신용장)에서 '화환신용장'으로 정의한 바를 의미한다.

**개인 정보**란 민감개인정보, 이름, 거주지 주소, 연락 정보, 나이,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시민권, 결혼유무 등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플랫폼**이란 HSBC 그리고/또는 고객이 무역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시서, 청구서 또는 기타 통지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전자 플랫폼을 의미하며, HSBCnet 을 포함한다.

**상환청구 사유(Recourse Event)**란 무역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 (a) 고객 그리고/또는 무역거래의 기타 당사자의 실제 사기, 불법, 무단 행위 및 혐의.
- (b) 추정되거나 실제로 발생한 화환신용장, 보증신용장, 서류 또는 무역 거래의 무효, 위반, 이행불가.
- (c) 무역거래 당사자간의 분쟁.
- (d) 지급을 제한하는 (HSBC 로 또는 HSBC 로부터 인지와 무관하게 그리고/또는 이로 인하여 지급불이행이 초래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치분, 법원 명령, 법규 또는 제재.

**보증신용장 (SBDC, SBLC)**은 각각 standby documentary credit, standby letter of credit 을 의미한다.

**제재**란 제 19 조 (법규준수와 제재) 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담보 계약**이란 고객의 HSBC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객의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기로 한 계약서를 의미한다.

**요율표(Tariff Book)**란 HSBC 의 수수료, 이자 및 기타 무역서비스 관련 요율이 책정된 표 (고객의 요청 시 제공되며 온라인 상으로 접근이 가능함)를 의미한다.

세금이란 물품및 서비스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인지세, 세금, 부과금, 징수금, 공제, 수수료, 관세, 정부기관에서 부과하는 차입금(compulsory loan) 또는 원천세, 관련 이자, 부과금 등을 포함한다(그러나 HSBC 의 순수입에 대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 정보**란 고객의 조세 현황, 고객의 소유자, "지배적 개인", "실질적 소유자" 또는 최종수익자의 조세 현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정보 (그리고 이러한 서류의 첨부 문서, 포기각서, 동의서)를 의미한다.

**무역관련대출(Trade Finance Loan)** 무역 거래와 관련하여 HSBC 가 고객에 제공하는 대출, 선수금, 신용 또는 기타 금융 지원을 의미한다.

**무역서비스**는 HSBC 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또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 명시된 바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화환신용장의 발행과 동 화환신용장과 관련하여 통지은행, 지정은행, 확인은행에 지시
- (b) 화환신용장과 관련하여 통지은행,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역할 담당 (개설은행 통지여부를 불문)
- (c) 증서 발급 그리고/또는 증서와 관련하여 환거래 은행에 지시, 구상보증(counter-guarantee) 또는 counter-SBLIC 및 면책약정서 발급
- (d) 증서와 관련하여 통지은행,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역할 및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 역할을 담당
- (e) 화환신용장, 증서 또는 서류 취급
- (f) 추심
- (g) 금융 또는 금융서비스(Finance) 제공
- (h) 무역관련대출 제공
- (i) 면책약정서 또는 화물선취보증서 발급 그리고/또는 운송 서류에 서명, 배서 및 승인
- (j) 서류 인도 또는
- (k) 무역 거래와 관련한 기타 물품및 서비스

**무역거래** 란 고객이 제 3 자로부터/제 3 자에게 물품또는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하며, 이러한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운송서류**란 제 8 조 (물품출고, 수입화물선취보증, 면책약정서의 신청 (APPLICATIONS FOR Release of Goods, Shipping GuaranteeS AND letter of indemnity))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6.2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표준약정에서,

- (a) **신청서 또는 무역서비스** (그리고 신청서 상의 무역서비스)는 HSBC 가 신청서를 수락하여 무역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행하기로 하는 고객과 HSBC 간 체결된 계약을 포함한다.
- (b) **고객, HSBC** 또는 기타 법인격 (person)을 지칭하는 경우 본 표준약정, 신청서, 대출 계약서 또는 국가별 부속계약서에 따른 권리 그리고/또는 의무의 승계인, 승인된 양수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당 인의 양수인, 승계인, 대리인, 지명인(당사자의 경우, 승인된 양수인 등을 의미)을 포함하는 것으로

- (c) **포함한 또는 포함한다**란 주어진 예시에 “제한되지 않고” 이들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 (d) HSBC가 결정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HSBC가 고객 등에 구매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결정 및 조치가 허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e) 고객의 승인, 확인 또는 지시라 함은, HSBC가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승인, 확인 또는 지시가 취소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f) 어떤 사람(any person)이란 개인, 기업 또는 기타 사업체, 정부, 국가 기관, 협회, 신탁, 합작투자회사, 컨소시엄 또는 파트너쉽 또는 기타 단체(별도의 법인격 여부와 무관)을 포함한다.
- (g) **규정**은 정부기관, 정부간 단체 또는 초국가적 기구, 이러한 단체 및 기구의 부서, 감독 당국, 자율 규제 기관 등의 규정, 규칙, 공식 명령, 요청 또는 지침(법적 효력 여부와 무관)을 포함한다.
- (h) 본 표준약정은 국가별 부속계약을 포함한다.
- (i) **본 표준약정** 또는 기타 계약서 또는 증서는 이들에 대한 수정, 보충, 갱신 그리고/또는 대체 사항을 포함한 본 표준약정, 기타 계약서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 (j) 명사의 단수형은 동 명사의 복수의미를 포함하며 그 반대도 같다.
- (k) 각 항 및 섹션의 표제는 참고용으로 마련된 것이다.

해당 용어들은 각각의 신청에 쓰일 뿐만 아니라 HSBC에 의해 여신약정, 기타문서 및 계약에 사용될 수 있다.

## SECTION 8 – 국가별 부속계약 (COUNTRY CONDITION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27. 적용 (APPLICATION)

- 27.1 본 국가별 부속계약은 고객이 수락했거나 수락하게 되는 표준 무역거래 약정 (이하 표준약정)을 보완하고 그 일부를 구성한다.
- 27.2 표준약정에 정의되거나 표준약정의 목적에 따라 해석되는 모든 용어가 본 국가별 부속계약에서 사용되는 경우(본 국가별 부속계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27.3 본 국가별 부속계약은 관련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HSBC 계열사가 상기 언급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8. 추가 / 보충 약정 (SUPPLEMENTARY CONDITIONS)

28.1 표준약정 제 1 조 2 항(적용)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HSBC 간 합의된 HSBC 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다음 조항 중 하나라도 표준약정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경우, 해당 조항이 해당 불일치 또는 상충의 범위 내에서 표준약정보다 우선적용된다.

제 6 조 - 담보

- 제 7 조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제 9 조 -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 제 10 조 -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 제 11 조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제 13 조 - 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 제 14 조 -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제 15 조 - 위험부담 · 면책조항
- 제 18 조 - 통지의 효력

28.2 표준약정 제 1 조 2 항(적용)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인 경우, 고객과 HSBC 간 합의된 HSBC 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표준약정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해당 조항이 해당 불일치 또는 상충의 범위 내에서 표준약정보다 우선적용된다.

28.3 무역 서비스가 고객이 상품을 수입하는 무역 거래와 관련된 경우, 작위, 부작위 또는 고객에게 귀속되는 기타 원인의 결과로 (a) 해당 상품의 가치가 상품 파손, 손상, 열화, 분실 또는 감가상각되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 언제든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b) 고객의 신용도가 악화되는 경우, 고객은 요청 시 HSBC 에 이에 대한 담보 및 보증 또는 HSBC 가 수락하는 추가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28.4 HSBC 가 하나 이상의 환어음 및/또는 선적서류로 구성된 문서(이하 "문서")에 대한 금융을 제공한 경우:

-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통지나 요구 없이도 아래 명시된 문서를 환매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환매 금액을 HSBC 에 지급해야 한다.
  - (i) 고객과 관련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 1 항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모든 문서 또는
  - (ii) 개설 은행/확인 은행/지급인과 관련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 1 항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개설은행/확인은행/지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문서.
-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HSBC 는 전화, 이메일 또는 서면 등 사전에 합의된 수단을 통해 개설은행/확인은행/지급인에게 지급 및 인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고객은 HSBC 으로부터 문서를 환매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환매 대금을 HSBC 에 지급한다.
  - (i) 해당 문서가 고객에게 통지된 HSBC 의 관련 내부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인수되지 않은 경우
  - (ii) 해당 문서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가 거부되어 반송된 경우 또는

- (iii) 해당 문서의 회수 불확실성 또는 불가능성때문에 HSBC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가 "회수 의문" 또는 "추정 손실"로 지정되어 HSBC의 회계 상 미수금으로 기록되는 경우.
- (c) 제 2 조 3 항 (a) 및 제 2 조 3 항 (b)에 따른 HSBC의 권리에 더하여, HSBC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설은행/확인은행/지급인 및 해당 환거래 은행에 대한 지급을 요구 또는 지급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8.5 무역 서비스가 고객이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 거래와 관련된 경우:

- (a) (i) 개설 은행/확인 은행/지급인이 고객에게 통지한 HSBC의 관련 내부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문서에 대한 지급, 인수 또는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ii) HSBC 또는 해당 환거래 은행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HSBC 또는 해당 환거래 은행은 고객에게 상품 처분 제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고객이 동 서면 통지 수령 후 10 일 경과 후 언제든지 상품을 처분할 수 있다. HSBC 또는 해당 환거래 은행은 고객 채무(HSBC의 경우) 변제 및 해당 문서의 매입과 관련된 고객의 기타 채무 및 연체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부수적 비용 지급에 상품 처분 대금을 사용할 수 있다.
- (b) 상품 대금이 고객의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HSBC의 요구 시 고객에게 통지된 HSBC의 관련 내부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상품 대금이 고객의 채무를 완전히 소멸하기에 충분한 경우, HSBC는 보유하고 있는 잉여 수익금을 고객에게 이체해야 한다. 단, HSBC는 이러한 잉여금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3 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에 따라 고객의 기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